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108 발 의 년 월 일: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이성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박 석, 박성연, 박환희, 이상욱, 이종환, 최민규, 홍국표 의원(14

명)

1. 제안이유

- 근래 도심 곳곳에 다수의 집회 및 시위가 발생하고 있고 현수막, 텐트 등 집회용품이 곳곳에 방치되어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품격과 미관을 해치고 있음.
- 특히 현행법상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집회 신고만하면 24시간 내내 현수막이 게시되고 집회 이후에도 각종 집회 관련 용품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조례개정을 통해 실제로 집회가 개최하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여 난립되고 있는 현수막 개시를 제한하고자 함.
- 또한 현수막에 기재하는 내용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게 하여 집회 및 시위문화를 개선하고 시민들을 무분별한 집회 및 시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게 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 나.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현수막 설치 시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1호 신설)
- 다.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현수막 설치 시 현수막 내용에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도록 함.(안 제11조의2 2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없어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집회현수막) 단체나 개인이 법 제8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 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표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 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 설치하여야 한다.
 -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혉 행 개 정 아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 용 등이 없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집회현수막) 단체나 개 인이 법 제8호 제4호 및 제5호 에 따라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표시 행사 또 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 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여 야 한다.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 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